

第51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9月30日(土) 10時 05分

議事日程

1. 1995年度 第1會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 案件

1. 1995年度 第1會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鍾路區廳長 提出)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7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7面
4.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7面
5.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7面
6.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数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7面

(10時05分 開議)

○議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전별로 심의하겠습니다.

1. 1995年度 第1會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鍾路區廳長 提出)

(10時 06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沈載得 委員長!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追加更正豫算特別委員長 沈載得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 委員長 沈載得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예산심의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추가경정예산심의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1995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1차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95년 9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총 40억 3,7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 세외수입 조정분인 과태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22억 9,200만원과 국고 및 시보조금 3억 2,700만원, 그리고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억 6,800만원이며 '95년도 당초 예산액 중 삭감경정재원 1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0억 3,700만원에 대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8억 3,000만원과 간주처

리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12억 700만원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억 7,600만원으로 경상비 29억 5,000만원과 투자사업비 11억 2,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본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편성요구액 1,590만 4,000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일부 경상비 등으로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편성요구액 18억 9,200만원의 내용은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인한 12억 1,100만원과 취로사업 노임상승에 따른 9,300만원, 노인정 및 어린이집 보수, 교재구입 1억 1,700만원, 명륜동·가회동 청사신축비 부족분 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중 72.6%가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등 필요한 경비로 판단하여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편성요구액이 10억 500만원으로 인건비 29.7% 일반경상비 42.9%로서 총 경상비 72.6%가 편성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27.4%에 이르고 있어 이는 법정경비 및 필요 최소한의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도시건설위원회 및 본 예결위 심사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공원관리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삭감하고, 지역교통관리 일반운영비 버스전용차선 예산은 계산착오로 인한 오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예산 9억 5,600만원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관리 및 주차단속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제3항에 의거 예산편성권자인 종로구청장을 대리하여 吳炳漢 總務局長의 동의를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추경예산을 심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9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 查 報 告 書

1995. 9.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특 별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9월 21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9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1995년 9월 29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3실]

〈문화공보실〉

(제안설명자 : 문화공보실장 김태호)

가. 제안이유

- 문화공보실 예산편성 내역은 효자동 사랑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 일용인부 임을 비롯한 각 예산과목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추가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

- 문화공보비 3,010만 6,000원 - 정규직 보수인상, 신문구독료 등
- 일반운영비
 - 신문구독료 : 2,259만원
 - 지역신문구독료 : 244만 8,000원
 - 케이블방송 설치 및 수수료 : 117만 5,000원
- 업무추진비 300만원
- 보상금 15만 7,000원

〈감사실〉

가. 제안이유

- 감사실 추경편성은 증원 직원의 급량비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 인상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나. 주요골자

- 감사실 운영비 408만 8,000원
 - 급량비 월정액 수당 : 42만원
 - 여 비 : 8만원

- 특수활동비: 300만원
- 업무추진비: 58만 8,000원

〈시민봉사실〉

가. 제안이유

- 시민봉사실 추경예산편성 내역은 여권과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인상분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나. 주요골자

- 일반운영비 3,431만 5,000원
- 여비 276만원
-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540만원과 62만원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899만 1,000원과 2,350만원

〈총무국〉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총무국 추경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여권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와 동청사 신축에 따른 경비와 행정장비 개선과 구청사 환경개선비 등 시급한 필수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나. 주요골자

- 총무국 주요예산
 - 기관운영비 5억 3,000만원: 추석 효도 휴가비, 여권과 충원인력 체력단련비 등
- 총무과
 - 서무관리 및 방법원관리 1억 4,500만원과 4,300만원
 - 동행정지도 3억 7,900만원
 - 선거관리비 2억 7,300만원을 삭감경정 편성
-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운영비 200만원
 - 법제전산운영 1억 3,700만원
- 국민운동지원과
 - 범죄없는 마을 선정계획 변경으로 200만원 시민자율경찰대운영 2,900만원을 삭감경정 편성

〈재무국〉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겸무 오병한)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재무국소관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1억 5,073만 6,000원으로
- 기정예산 삭감경정예산 편성액 1억 3,919만 5,000원
- 정수물품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2억 1,274만 9,000원
-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인상분 3,894만원
- 우편요금 및 OMR 고지서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3,580만 1,000원
- 세무민원 상담관 운영 보상금 244만 1,000원 등으로 대부분 정수물품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세무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인상액과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액 그리고 민원상담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국〉

(제안설명자: 시민국장 김현식)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시민국 소관세출 예산은 208억 7,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911억 200만원의 22.9%를 차지하고,
-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여 213억 3,6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추경예산 28억 3,000만원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 중에서 감액경정 5억 500만원, 추가경정예산 4억 8,600만원, 총 10억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이성세)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95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총 8,461만 9,570원으로 세출내역으로 인건비 2,256만 2,000원으로 26%를 차지하고, 기타 운영비는 6,205만 7,570원으로 전체 대비 74%로 편성되었고,
- 기타운영비 중약품구입 및 의료부조자 진료시 약품대 등 4,453만 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제안설명자: 의회사무국장 이보규)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

면, '95. 6. 30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계상하였고, 제2대 개원과 관련하여 청사 환경정비시 부족분과 의정활동보조에 필요한 일부 행정장비의 구입 비용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효도휴가비, 신문구독료에 대한 인상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사무국운영에서 1,902만 4,000원, 의정활동에서 4,410만원, 312만원을 증액과 과목경정 및 감액하여 총 1,590만 4,000원을 증액 요청하여 당초예산 12억 3,071만 8,000원 대비 1.3% 증액된 12억 4,6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 의정활동에 있어

- '95. 6. 30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4,4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족한 재원은 자체 충당코자, 동별 의정결산운영비 5,104만원 중에서 2,552만원을 과목경정을 하고, 구행정업무지원 및 홍보비 1,800만원 중에서 1,056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동민체육대회격려금 2,200만원 중에서 1,114만원을 과목경정 및 감액하여 총 4,722만원 중 4,410만원은 '97. 7월부터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312만원은 감액 삭감하게 되었는데,
- 위 소요재원 중 삭감분을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제외되어 삭감케 되고, 증액분은 '95년 추경시 시보조 조정교부금이 지급되지 못한 관계로 자체 예산 중 경상비가 아닌 비사업성인 경비로 과목경정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 사무국운영에 있어서

- 정액수당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65만 5,000원은 공무원자녀 중 중·고등학생의 학비 인상에 따라 계상하였고,
- 관서당경비 45만 6,000원은 신문구독료 인상과 지역신문구독료 지급에 따라 계상하였고,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월정액 인상으로, 복리후생비 729만 2,000원은 중추절에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인상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한 것이며,
- 시설비 500만원은 의회청사 도색비 및 수리비로, 자산취득비 502만원은 사무비품으로 의정활동 보조에 필요한 일부 행정장비로 전문위원실에 냉장고1대, 사무국에 TV 1대, PC(586) 1대, 프린터 1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장소수·윤주채)

○ 예산개요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예산액	금 회 추 경						확 정 예 산	증가율 (%)
			추 가					경 정		
			계	소 계	세 계 잉여금	보조금	세 외 수 입			
계		103,424	5,283	4,037	1,168	577	2,292	1,246	107,279	3.9
일 반 회 계		91,102	4,076	2,830	1,167	327	1,336	1,246	93,932	3.1
특 별 회 계		12,140	1,207	1,207	1	250	956		13,347	9.9
구 분	의료보호	674	251		1	250			925	37.2
	새 마을	165							165	
	주 차 장	11,301	956				956		12,257	8.5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경 상 비			투자재원	비 고
		소 계	인건비	일반경상비		
일 반 회 계	4,076	2,960	1,211	1,749	1,116	
구 성 비	100%	72.6			27.4	

〈위원회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운영위원회	시민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비 고
일반회계	93,932	1,246	73,178	19,508	
구 성 비	100%	1.4	77.9	20.7	

〔증가요인별 분석〕

〈세 입〉

- 순세계 잉여금 11억 6,800만원
- 보조금 5억 7,700만원
 - 여권과 신설
 - 국고 1억 7,600만원
 - 시비 1,500만원
 - 의료 운영비
 - 시비 2,500만원
- 세외수입 증가분 13억 3,600만원(일반회계)
 - 공원 매점 공시지가 상승분 5,100만원
 - 뇌염예방 접종수수료 인상분(550원→3,400원) 800만원
 - 택지소유부담금 7억 6,800만원
 - 공유재산변상금 3,200만원
 - 각종 과태료(10부제,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4억 7,900만원
 - 구청 주차장운영 1억 100만원
- 기존예산 삭감경정 12억 4,600만원

〈세 출〉

- 인건비 상승 12억 1,100만원
 - 효도휴가비 봉급 50% 추석에 지급
 -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
 - 중 학 교 11만 700원→12만 5,100원
 - 고등학교 19만 4,300원→22만 800원
 - 5급이상 직책급인상
 - 2급 200,000원→350,000원
 - 3, 4급 200,000원→250,000원
 - 5급 55,000원→ 80,000원
 - 동장 30,000원→ 80,000원
-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 7억 3,400만원
 - 기본급(10,800원→11,600원)
 - 시간외 수당(4,700원→5,230원)
 - 특수업무수당(35,000원→50,000원)

- 자녀학비수당(공무원준하여)

- 취로사업 노임 상승(15,000원→17,000원) 9,300만원
 - 노인정, 어린이집 보수, 어린이집 교재구입 1억 1,700만원
 - 명륜동, 가회동 청사 신축비 부족분 2억 4,500만원
 - 버스전용차선 근무복 2,700만원
 - 정체지점 교통개선사업 4,200만원
(중앙성결교회앞, 해화국교, 올림픽기념관, 충신시장, 청룡사앞)
 - 관내도로보수 및 포장공사(14개소) 2억 7,400만원
 - 관내하수도 시설보수 1억 5,000만원
- 〈감액경정〉
- 무악동 42-2 46-191외 3개소 덧씩우기 : 감액 3,500만원(1억 9,500만원)
 - 새문안길 보도정비공사 : 감액 9,600만원(2억 5,000만원)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60조에 의한 조정교부금 영달이 되지 않아 추가발생재원 28억 3,000만원과 기존예산삭감 경정예산 12억으로 세입을 메꾸고 있으며,
- 추경편성 예산 중 72.6%가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심의의 탄력성이 극히 약한 형편임
- 소송배상금 5,000만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나 당장 필요한 경비로 재편성된 경우이며
- 청소사업비 예산 '95 당초예산이 137억이 계상되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금번 당시 7억

3천이 추가편성된 바 절감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공원관리 연구개발비가 당초 3,4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어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 지역교통관리 시설비 중 정체지점 교통개선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하수관리시설 중 관내 하수시설 보수는 '95년 기본예산 편성시 1억을 감액한 바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재차 편성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질의자 : 박문배위원, 이병문위원, 정태순위원, 오금남위원, 박종식위원, 김이환위원, 선상선위원)

- 제안설명서 내용 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성의 부족과 의원에 대한 무시풍조가 아닌지?
- 가회동청사 설계변경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 무악동 42-2~46-191의 3개소 덧썩우기 등 기정예산을 감액경정은 본예산편성시 착오인지 설계 잘못된지?
-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중 동복과 춘복의 숫자의 차이는?
- 뇌염백신 가격이 500→3,400원으로 인상된 요인은?
- 하수도 시설보수 1억 5,000만원의 사용처는?
- 어린이집 등 시설비 7,720만원이 편성된 기준은?
- 과속방지턱 소요예산이 과다편성이 아닌지?
- 카메라를 신규 구입하는 이유는?

(답변자 : 총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여권과장)

- 시정하겠습니다.
- 가회동 신축공사 지하터파기 중 위험요소가 발견 설계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이 지역 본예산편성시 하수시설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하수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어 예산절감한 것이고, 새문안길 오나멘트 보도가 현재 양호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76명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증가 배치될 예정 인원과 현재 부족분을 합한 것입니다.

○ 용량증가에 다른 것으로 전국이 같은 사항입니다.

○ 준설비용 5,000만원과 하수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1억원입니다.

○ 어린이집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발생한 예산입니다.

○ 이면도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아 이면도로에 대한 평균치입니다.

○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5. 討論 要旨 : 박문배위원

○ 공원관리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교통에 급량비 2,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6. 審査結果 : 수정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해당없음

○議長 金憲中 沈載得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特別市鍾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종로구청장 제출)

(10時 20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청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市民行政委員會 玄壽漢 委員長!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玄壽漢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玄壽漢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아 조석으로 제법 한 기까지 느끼게 하는 가을을 맞이하여 짧은 시간에 심도있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1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삼청동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가 삼청동 105번지 2호에서 삼청동 105번지 1호로 변경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무부에서 취급 중인 일반여권 발급 업무가 우리 구에서 취급하게 됨에 따라 이

에 따른 여권과를 신설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원 46명을 증원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구의회사무국 정원의 총수를 구청 정원조례에 포함시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원 관리의 효율성과 구청의 타부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권한사항 중 보건소장, 동장, 구의회사무국장에게 기위임되어 있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건축법 등의 개정으로 위임사항의 일부를 삭제 또는 추가위임하는 내용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삭제된 사항은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개인 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차원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신용 대출하는 안건으로 시행 취지는 좋으나 예산이 미확보된 현 상태에서 차후 예산 확보 후 본 안건은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1995. 9.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7월 19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8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995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수행 능력 제고를 위하여 삼청동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 설치조례중 삼청동사무소 소재를 변경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삼청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삼청동 105-2」에서 「삼청동 105-1」로 개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동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6조).
-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구 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종로구	청운동 삼청동 송인동	삼청동 105-1	삼청, 팔판, 안국, 소격, 화, 사간, 송현

[청사신축내용]

- 소 재 지 : 삼청동 105-1
- 공사기간 : '94. 7. 20 ~ '95. 5. 31
- 개청일시 : '95. 7. 13
- 청사규모 : 대지 181.6평, 건물 지하1층 지상2층 연 261.7평
- 예 산 액 : 14억 8,000만원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승태, 오금남, 천상욱, 박문배, 박종식, 홍기서 위원)

- 삼청동청사 신축에 따른 구청사 용도는?
- 삼청동청사 신축에 사용된 예산 중 시예산인지 구예산인지의 여부?
- 구청사를 탁아소 등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
- 구청사를 관변단체에 기증하기 위한 것인지?
- 신청사 건립에 14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사를 주민편익사업에 사용할 용의는?

(답변자 : 총무국장 오병한, 총무과장 김춘식)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이동도서관 등 관변단체에서 사용할 계획임.
- 전액 구비로 지출했습니다.

- 구청사에 1차적으로 행정사무에 수반되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탁아소 설치 문제는 폐적한 장소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 관변단체에 대하여는 유상임대할 계획입니다.

- 구청사 사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5. 討論 要旨 : 없음

6. 審査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해당없음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9.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9월 11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년 9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995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提安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외부부에서 취급 중인 일반여권 발급업무가 자치구에서 취급토록 여권과 기구 신설 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여권과 신설(3개계) : 총무국 소속

여권과 { 여권행정계
여권 1계
여권 2계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③ 구의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 여권법 제3조(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여행)과 복수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으로 나눌 수 있다.
- 여권법 제15조(업무의 대행)
① 외부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및 반납명령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와 서울시장에게 대행할 수 있다.
- 여권법시행령 제26조(업무의 대행)
① 외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사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한다.
- 외부부장관 일반여권 업무대행 재위임 승인
영일 20830-5750('90. 2. 8)
- 발급신청 서류의 접수

- 여권의 교부

- 여권의 반납수리

- 여권의 발급

- 기재사항 변경

- 분실, 소실의 신고접수

- 물취, 기타 외부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 서울시장 재위임

- 시민 29400-795('95. 8. 7)

- 설치구 :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구

〈현재진행사항〉

- 예산 국고지원 : 1억 7,689만 8,000원

- 사무실 : 의회건물 4층(120평)

- 직 원

• 정원 46명

• 현원 42명(행정직 1명, 기능직 3명 10일 1일까지 발령 예정)

• 과장 : 시민봉사실장 겸임

〈검토의견〉

- 일반여권에 한해 4개구에 위임된 사항으로
- 당 구는 시내중심지에 있어 타구보다는 여권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에 따른 인원이거나 예산 측면의 배려가 타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천상옥, 박문배, 안철주, 정태순, 홍승태, 홍기서, 정창희, 오금남 위원)

- 여권과의 계 명칭 중 여권 1계를 발급계, 여권 2계를 신원조회계로 변경할 용의는?
- 국가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사무수행 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 여권과 신설에 따른 구 재정상 반대급부 있는?
- 여권과 직원에 대한 어학능력 정도에 따른 배치 기준은?
- 여권과 인원 46명이 적정한지와 그 인원을 감할 수는 없는지?
- 여권발급 현황과 사무실 현황은?
- 여권발급에 따른 시민들의 내방시 구의회 사무국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이 딱딱한 분위기로 의회의 이미지 손상 우려에 대한 대책은?

(답변자 : 총무국장 오병한, 여권과장 황의진)

- 외부부 여권과의 업무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 국고지원금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 국가업무의 위임사무로서 외부부의 수입으로 됩니다.

-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향상될 것입니다.
- 별정 7급인 어학에 능통한 사람이 배치될 것입니다.
- 정원조정 내역은 종로구가 여권업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외부부에서 46명으로 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94년 통계에 136만권이 발급되었고, 현청사 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민원이 편리하도록 사무실을 확보하였습니다.
- 의회사무국 출입문은 총무과와 협의하여 밝은 색상으로 도색하겠습니다.

5. 討論 要旨 : (토론자 현수한 위원)

-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6. 審査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해당없음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9.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9월 14일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5년 9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995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647호 '95. 5.16)에 의하여 개정.
- 외부부에서 취급 중인 일반여권 발급업무가 자치구에서 취급토록 여권과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증인에 의하여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의회사무국 정원의 총수 : 26명(신설)
- 구 정원 : 46명(증원)
- 총정원 : 1,061명 → 1,107명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개정배경〉

-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별도 규정하였으나 이를 구청 정원조례에 포함시켜 통합관리코자 하는 내용과
- 여권과 신설에 따른 소요인원의 정원 증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

〈골 자〉

-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중 정원규정은 폐지(삭제)하고,
- 구청 정원조례에 사무국 정원 26명을 통합함.
- 구분청 정원을 1,061명에서 1,107명으로 46명을 증원

-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정원의 총수) 1. 구 본 청 : 1,107명 2. 직속기관 : 75명(보건소) 3. 동 : 398명	제2조(정원의 총수) 1. 구 본 청 : 1,061명 2. 의회사무국 : 26명 3. 직속기관 : 75명(보건소) 4. 동 : 398명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한다.

-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1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본청
2. 의회사무국
3. 직속기관
4. 출장소
5. 사업소
6. 동

○ 제10조(기구 설치기준)

- ③ 구의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권과 설치현황]

- 위임사항: 일반여권 발급, 반납, 분실신고 접수, 기타 외무부의 지정업무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여권법 제15조
 - 위임근거: 외무부장관 승인('90. 2. 8), 서울시 시정 12200-587('95. 8.17)
 - 설치구: 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구
 - 업무개시: '95.10. 1
 - 경비: 인건비 및 운영비 국고지원(1억 7,689만 8,000원)
 - 기구: 총무국내 여권과 설치(여권행정계, 여권1.2계)
 - 인원: 정원 46명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여권업무 위임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5. 5.16 개정 시행됨으로써 이에 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 그동안은 사무국설치조례에서 사무국 구성원의 직급별, 직종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조례 개정안에서는 총정원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직종

별,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구청 타부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현재와 같은 완전한 기관 분립형이 아닌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 부득이한 개정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박문배, 심재득, 홍승태, 홍기서, 오금남, 안철주, 박종식 위원)

- 여권과 직원 46명 중원 중 외무부 여권과에서 내려오는 직원과 자체 증원 인원은?
 - 정원이 46명(현원 42명) 중 20명만 내려오고 나머지 26명과 정원에 대한 T/O부족분은?
 - 정원 1,107명 중 42명의 결원에 대한 구청전 실·과의 형평성은?
 - 동사무소의 직원 증원을 제한할 용의는?
 - 구의회사무국 직원 26명을 구정원 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 증원 46명에 대한 예산은?
- (답변자: 총무국장 오병한, 총무과장 김춘식)
- 외무부에서 20명이 내려오고, 나머지 26명은 지방직으로 충원하였고 나머지는 본청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하겠습니다.
 - 자체 충당할 계획입니다.
 - 그 전반에 대한 인력을 재검점할 계획입니다.
 - 동 행정인력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 국고지원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5. 討論 要旨: 없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해당없음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9.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7월 19일 중

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5년 8월 10일

다. 상정일자: 제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995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개정(1994.12.20 법률 제4789호)에 따라 구청장 권한사항 중 보건소장, 동장,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기위임되어 있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건축법 등의 개정으로 위임사항의 일부를 삭제 또는 추가 위임코자 하는

사안임.

나. 주요골자

- 건축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수리: 법령 제정으로 신규
-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구청장 권한 업무로 법 개정된 사항
-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구청장 권한 업무로 법 개정된 사항
-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 구청장 권한 업무로 법 개정된 사항
-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구청장 권한 업무로 법 개정된 사항

〈기존된 위임조례에서 삭제된 업무〉

기 관 명	업 무 명	사 유
보 건 소	1. 의약품판매업 허가 2. 마약취급자 면허 및 증교부 3. 마약판매서 구입서 교부 4. 사고마약 폐기허가 5. 마약취급 자격상실자 신고 6. 마약취급자 단속 7.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지정 8.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판매승인 9.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사고보고의 수리 10.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 11. 전염병 예방접종 시행 12. 전염병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13.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 용도변경 14. 전염병 예방조치 15. 소독업 허가 16. 기생충 예방을 위한 허가 17.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18. 종합병원 등 개설허가 변경일 지도감독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에 의거 규칙으로 위임.

〈기존 위임조례에서 제외된 업무〉

기 관 명	업 무 명	사 유
동	1. 부연분묘 개장허가 2. 건축(20㎡미만) 신고 3. 가설건축물 신고 4. 옹벽 담장 신고 5. 일시도로 점용허가 6. 광고물 표시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에 의거 규칙으로 위임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직접 위임 직접 위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에서 위임 서울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8조에서 직접 위임

〈추가 위임된 업무〉

기관명	업무명	사유
보건소	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수리 2.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수명령, 청문실시 나. 과태료 부과 3.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 사무 가. 보고실시, 개수명령 나. 과태료 부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약사법 제64조 제69조 제71조의 2 약사법 제64조 제79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 본건은 구청장 권한사항의 위임 규정으로서,
- 종전에는 시장 권한을 구청장이 위임받아 다시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을 본조례에 규정하였던 것을,
- 본개정안에서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구청장 고유권한사항만 위임코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나,
- 금번 개정된 조례를 즉시 시행할 경우 금회 삭제된 업무는 규칙 제정시까지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정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
 - ④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1. 건축신고의 수리
 -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 3. 담장·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홍기서, 홍승태, 정창희, 천상옥 위원)

-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 위임에 따른 위생용품의 누락 여부는?
 - 지방자치법 제95조 위임시 상급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요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부칙에 경과규정을 수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 (답변자: 총무국장 오병환, 기획예산과장 윤수현)
- 개별법에서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등록으로 위임되어 있어 위생용품에 대한 것은 위임규정이 없어 신고사항인 것으로 봅니다.
 -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討論 要旨: 천상옥 위원

- 부칙에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삭제된 사항은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 발의함.

6. 審査結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현수한 위원장, 홍기서 간사, 안철주위원, 오금남위원, 천상옥위원, 심재득위원, 박문배위원, 박종식위원, 정창희위원, 홍승태위원, 정태순위원)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수주요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9.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経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8월 30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9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995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説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종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등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 바 이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기존 징수조례에 “파”함을 신설 아래 사항을 추가 규정함.

- 문서열람 1건 1회 : 100원
- 문서의 정정 1건 : 200원
- 문서의 복사 1매 : 100원

3. 専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관련법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14조〉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21조〉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검토의견〉

○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은 법·령의 위임에 의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천상옥 위원

○ 본안건은 상위법에 의한 관례적인 내용으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5. 討論 要旨 : 없음

6. 審査結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 현수한 위원장, 홍기서 간사, 천상옥 위원, 심재득 위원, 박문배 위원, 박종식 위원, 정창희 위원, 홍승태 위원, 정태순 위원, 안철주 위원, 오금남 위원)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5. 9.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経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7월 29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8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1995년 9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説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 주요 골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명 칭	○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대상사업	○ 일반소득사업, 영세민지원 등	○ 주민소득지원, 영세민생활안정지원
지 원 액	○ 마을 : 1억원 이하 ○ 가구 : 5백만원 이하	○ 주민소득지원금 : 가구당 2천만원이하 ○ 영세민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대부조건	○ 3년거치 2년균분상환(무이자)	○ 2년거치 2년균분상환(년 5%)
운 영 관리체계	구	○ 구에서 금융기관지정 위탁관리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관련법규 검토

(지방자치법)

○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내무부 시달지침)

- 내무부 진흥 13240-191('95. 5. 9)

- 새마을특별소득지원사업 개선지침 시달

(검토의견)

○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해주는 하나의 복지 차원의 제도로서 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독지가 기탁금에 의존하고 있음

○ 제7조(수탁관리선정)의 제목을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엡센스 국어사전

[수탁 : 부탁을 받음]

[위탁 : 맡기어 부탁함. 의뢰함]

○ 또 제7조 내용에 있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본 규정은 위탁을 전제로 금융기관 선정방법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예) 수정안

① 구청장은 본기금의 관리를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융기관 선정, 위탁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1호의 “그 소관자금은”이란 전조 인용문구는 본 조항이 독립조

항이므로 “그”란 전조항을 지칭하는 표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종로구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안철주, 천상옥, 홍기서, 오금남, 정창희 위원)

○ '94년도 지원액은 얼마이며, '95년 현재 미상환액 및 체납액은?

○ 본안은 시행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보면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금 확보는 가능한지?

○ '86년~'95년까지 잘 해오던 것을 대출요금 인상으로 잠음이 예상되는데 의견은?

○ 영세민이 대출받을시 담보 및 연대보증을 요하는 사항으로 부담을 주는데 대책은?

○ 현재 미회수 대출금은?

(답변자 : 총무국장 오병환, 국민운동지원과장 유재곤)

○ '94년도 지원액은 1억 4,3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844가구에 14억 2,400만원이고 체납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 예산액에서 1억원을 지원 예정이며, 남기미도래 금액 7억 600만원을 합쳐 운영하겠습니다.

○ 시중은행 이율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잠음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은행기관에 수탁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연내 9,000만원이며, '83~'95년도까지 대부으로 인한 향후 징수금액은 7억 600만원입니다.

5. 討論 要旨 : (토론자 홍기서 위원)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본안을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6. 審査結果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표결에 부침 찬성 7명, 반대 1명).

7.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해당없음

○議長 金憲中 玄壽漢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 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閉會를 선포합니다.

(10時 35分 閉會)

○出席議員 17人

金 憲 中	洪 承 台	安 哲 柱
李 炳 文	吳 錦 南	千 相 旭
玄 壽 漢	沈 載 得	鄭 泰 淳
李 炯 述	丁 昌 熙	朴 文 培
洪 起 瑞	康 來 奎	金 以 煥
金 正 大	宣 相 善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It emphasizes that proper record-keeping is essential for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organization. This section also outlines the various method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ensuring that the information is reliable and up-to-date.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focuses on the financial aspects of the organization. It provides a detailed breakdown of the budget, including income and expenses, and discusses the strategies implemented to manage the funds effectively. This section also highlights the role of the finance department in ensuring that the organization remains financially sound and sustainable.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addresses the operational challenges faced by the organization. It identifies the key areas where improvements are needed and outlines the steps being taken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ection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to ensure that the organization is running smoothly and efficiently.

4.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future plans of the organization. It outlines the long-term goals and the strategies to achieve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market conditions and the organizat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This section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research in staying ahead of the competition.

5. The fif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n the community. It highlights the various initiatives and programs that the organization has implemented to support the local community and promo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section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and the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6. The six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that the organization must comply with. It outlines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hat apply to the organization and discusses the steps being taken to ensure compliance. This section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legal and regulatory activities.

7. The seven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n the industry. It highlights the various initiatives and programs that the organization has implemented to promote the industry and support its growth. This section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y and the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8. The eigh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n the global market. It outlines the various strategies being implemented to expand the organization's reach and compete in the global market. This section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global market and the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9. The nin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n the future. It outlines the various challenges that the organization may face in the future and discusses the steps being taken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ection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future and the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10. The tenth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n the present. It outlines the various achievements of the organization and discusses the steps being taken to maintain and improve these achievements. This section als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present and the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